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

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최판술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(일명 ‘대포차’)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